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 1등급~5등급 까지의 수급자 중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지 등

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계약해지	입소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운영규정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 될 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를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등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물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한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Ⅲ.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정보

공단 급여 수가 (2026.01.01 ~ 2026.12.31)

단위 : 원 / 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일반	88,520 원	82,120 원	77,540 원	77,540 원	77,540 원

본인 부담률 및 부담액

일반(20%)	감경(12%)	감경(8%)	기초(0%)	의료(8%)
20 %	12 %	8 %	0 %	8 %

구분	수급자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일반	일반(20%)	17,704 원	16,424 원	15,508 원	15,508 원	15,508 원
	감경(12%)	10,622 원	9,854 원	9,304 원	9,304 원	9,304 원
	감경(8%)	7,081 원	6,569 원	6,203 원	6,203 원	6,203 원
	기초(0%)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의료(8%)	7,081 원	6,569 원	6,203 원	6,203 원	6,203 원

계약의사 진료비 (2026.01.01 ~ 2026.12.31)

초진비	18,840 원	재진비	13,370 원

비급여 수가 (2026.01.01 ~ 2026.12.31)

청구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2,900 원	기준으로 계산		
② 상급침실료	1인실		(1박) 기준으로 계산 , 외박시 청구하지 않음		
	2인실				
③ 이,미용비			(1개월) 기준으로 계산		
④ 경관유동식			(1식) 기준으로 계산		
⑤ 간식비		400 원	(1식) 기준으로 계산 (외출,외박제외)		
⑥ 기타비		수급자 별로 계산	등급외	수급자마다 등급외 별도 설정	
식사재료비 월한도액			월한도액(식사재료비 + 경관유동식비 + 간식비)		
상급침실료 월한도액					
비고					

벧/엘/요/양/원